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약계층에 대한 종량제 봉투등 무상지원 규정 신설〉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6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취약계층에 대한 종량제 봉투등 무상지원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1일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취약계층에 대한 종량제 봉투등 무상지원 규정 신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게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제9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2. 「기초연금법」에 따른 <u>기초연금 수급자</u>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지원대상자</u>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u>장애인</u>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u>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⑨·⑩ (생략)
	⑩·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 단가 평균은 100L 기준 1,330원~2,988원이고, 2022년 기준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8,076억 9,600만원임.²⁾

[2022년 가정용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 단가 평균]

(단위: 원)

시·도별	5L	10L	20L	30L	50L	75L	100L
서울특별시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부산광역시	204	390	786	1,203	1,854	2,853	-
대구광역시	150	290	560	850	1,400	2,080	2,770
인천광역시	184	348	680	-	1,683	2,622	2,988
광주광역시	200	380	740	1,110	1,830	2,730	-
대전광역시	170	330	660	-	1,650	2,480	-
울산광역시	160	310	660	-	1,490	2,220	-
세종특별자치시	130	270	540	820	1,440	-	-
경기도	157	303	595	923	1,486	2,262	2,650
강원도	114	204	402	458	995	1,509	1,935
충청북도	113	220	418	533	991	1,577	1,523
충청남도	104	194	381	565	954	1,309	1,830
전라북도	120	205	395	664	974	1,587	-
전라남도	88	166	322	453	841	1,282	1,890
경상북도	106	182	342	500	843	1,413	1,330
경상남도	135	269	532	773	1,295	1,934	1,883
제주특별자치도	120	240	700	1,050	1,750	-	-

자료 : 2022년 쓰레기종량제현황(2023.12.31., 한국환경공단)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자료 : 2022년 쓰레기종량제현황(2023.12.31., 한국환경공단)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³⁾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또는 봉투 비용을 경감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 하고 있음.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지급 현황]

구분	시·군·구 수	무상제공 기초 지자체 수
계	229	182
서울시	25	22
부산시	16	16
대구시	8	8
인천시	10	1
광주시	5	4
대전시	5	5
울산시	5	3
세종시	1	1
경기도	31	30
강원도	18	15
충청북도	11	6
충청남도	15	12
전라북도	14	11
전라남도	22	14
경상북도	23	15
경상남도	18	17
제주도	2	2

자료 : 환경부

참고로 2022년 기준 무상지급 종량제 쓰레기 봉투 현황을 살펴보면, 8,731만 7,000매를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판매 단가로 환산할 경우 261억 3,900만원에 해당함.

3)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2.1.) III-1-아.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저소득 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L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중복지급은 제외하며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L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상 제공 관련 현황('22년 기준)]

(단위: 천매, 백만원)

	계	1L	2L	3L	5L	7L	10L	20L	30L	40L 이상
지급 수량	87,317	1,502	8,119	5,690	6,014	52	34,791	23,574	336	7,239
환산 금액	26,139	132	1,161	925	979	25	10,266	10,293	223	2,135

자료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쓰레기 종량제 현황 2-라.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재가공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지급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지급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개정안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여건, 취약계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대상의 범주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4억 7,000만원 이상(연평균 12억 9,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안 제14조제9항 신설) - 취약계층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무상제공	1,215	1,255	1,294	1,334	1,372	6,470	1,294

주: 1. 지급대상은 2022년 기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47개소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한정

2.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에 월 60L(=20리터×3매), 2인이상가구에 월 120L(=20리터×6매)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3.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통계 및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무상지원을 법률로써 규정하여 무상지급을 확대할 경우,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이 퇴색되고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급여나 연금에 쓰레기 봉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② 취약 계층이라 하더라도 폐기물배출자 부담 원칙을 인지하고 감축을 위한 노력 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에 배출자 부담 완화 조항을 설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의견, ③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되었으므로, 심사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